

예 산 총 칙

2010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197,017,855	5,910,536
일반회계	179,722,763	5,391,683
특별회계	17,295,092	518,853
기타특별회계	17,295,092	518,853
상수도사업특별회계	3,316,352	99,491
수질개선특별회계	9,497,282	284,918
의료보호특별회계	365,936	10,978
기반시설특별회계	76,792	2,304
농공지구단지조성특별회계	2,351,343	70,540
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	1,687,387	50,622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 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"해당없음" 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"해당없음" 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,057,773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2,6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